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0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박성훈·고동진·서지영

곽규택 • 박충권 • 이헌승

정연욱 • 백종헌 • 구자근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공장설립제한지역), 경과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시행 이전인 2010년 11월 26일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공장은 제외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수도법 시행령 부칙<제22506호, '10.11.26〉 제5조).

그러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2010년 11월 26일 이후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장이 설 치되었다 하더라도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취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에 설

치된 공장은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 및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 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매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의 증설 등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 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 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 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가뭄 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제한에 관한 자문 추가(안 제30조제1항제4호 신설)
- 라.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안 제39조 제2항 각 호 신설)
 -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 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가뭄으로 인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 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합(안 제39조제4항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증설 등을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고 ·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문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득이한 이유로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중 가뭄으로 인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수도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
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증설 등을 할 수 있
	<u>다.</u>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의 등록 등)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	
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	
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 복	2
구 등 누수 관리. <단서 신	<u>다만 사고·재해</u>

설>

3. • 4. (생략)

② ~ ④ (생 략)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 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 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 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다.

<신 설>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문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 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 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 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신 설>

<신 설>

-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중 가뭄으로 인해 수돗물의 공
 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
 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
 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 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수돗 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 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수 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수 도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 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하도록 명할 수
	<u>있다.</u>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